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14 | 2026.1.5 (2025.12.29~2026.1.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형별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지정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시설 등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 및 양벌규정 등을 신설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익단체가 가해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등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이를 전제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정보공개서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0인)」,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3인)**」 ,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납부세액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한편, 환급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6인)**」 ,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등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의원·윤재욱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6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발표(고용노동부)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 8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8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8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9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법제처) 1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12
- 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20인) 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1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1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0인) 14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의원 등 13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의의원 등 11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6인) 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17
•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장겸의원 등 11인)	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4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18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19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19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19
•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의원 등 20인)	20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20
•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3인)	21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21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21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2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2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2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24
•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의원·윤재옥의원 등 11인)	2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의 유형(해상경계, 매립지 관할 분쟁 포함)과 시사점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노동]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이 공개되었습니다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331개 규정 대폭 정비 - 기업 중대 위법행위는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실효적 억제 - 사업주·일반국민 등 민생 밀착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전환하거나 형벌 완화	2025-12-30
---------	--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9.30일,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힘.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음

당정은 ①책임성, ②시의성, ③보충성, ④형평성·정합성, ⑤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되,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기로 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당정은 2차 방안의 경우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음

① 금전적 책임성 강화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과징금을 현실화

②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여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

③ 민생경제 부담 완화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대폭 완화하여 민생 안정 도모

당정은 오늘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지난 9월에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하여 경제 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임.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제형벌 미인지·미숙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 등과 함께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발표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9.24.~12.24.)
결과 대국민 보고

2025-12-30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음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음

* 민관 공동 단장(배규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부단장(김종진)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경총, 중기중) ▲전문가 ▲주요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노동부)

이번 공동 선언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가 모두 참여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노동계)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음.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음.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음.

이어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노사정이 공감한 과제를 '26년 추진하기로 했음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산업통상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미정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 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인바,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026-04-24 시행 예정
-------	-----------------------------------	------------------

현행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026-07-01 시행 예정
---------	---------------------------------------	------------------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2026-07-01 시행 예정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교육세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2-30 시행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기주식보고서에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12-31 시행 예정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 준용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일정한 기준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향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12-31 시행 예정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로서 시장 수요와 부가가치가 높아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은 높은 제조 기술 수준과 설비투자 비용으로 인하여 위탁개발생산 방식을 활용한 제품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추세인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3-01 시행 예정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30. ~2026.02.09.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0호, 2025. 1. 31.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폐지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전화: 044-201-7427, 팩스: 044-201-742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29. ~2026.02.09.
-------	--------------------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세대별 배포 시 요약본으로 대체하고 개정안 전체 내용은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개선하고,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승인가한을 명확화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철거·파손 및 증설·증축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화재안전성능보강으로 인한 철거·파손 및 증설·증축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로 행위절차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74, 팩스: 044-201-5684)

법제처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5.12.29. ~2026.02.09.
-----	---	-----------------------------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지정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시설 등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기획단](#) (전화: 044-200-6736, 팩스: 044-200-687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2025-12-30 발의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불출석죄(제12조), 국회모욕죄(제13조), 위증죄(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청문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의 장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회증언감정법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 ①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의2 신설)
- ②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12조의3 신설)
- ③ 신설되는 범죄에 대한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5조를 개정함 (안 제15조제1항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20인)

2025-12-31 발의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쿠팡은 책임인정과 피해배상은커녕,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모하게(reckless)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대기업들이 책임인정과 배상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 미국기업임을 자처하는 쿠팡은 한국에서 미국 대기업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쿠팡의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와 징벌을 하려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함

이외에도 재벌 계열사 간의 부당한 합병이나 분할 등 과정에서 이사들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주주 또는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기업의 담합, 제조물 하자(예 : 가슴기 살균제 피해), 기만적 광고(예 : 아파트·상가 허위과장 광고) 등의 공정경쟁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다수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기업과 납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 등 현행 제도로는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제재가 어렵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피해구제나 피해예방 활동을 해 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수행 위임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익단체가 가해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등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이를 전제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 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와 아울러 진실을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확인과 배상을 지연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이와 같은 가해 대기업과 다수 피해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가해 대기업의 책임과 사실과 책임의 은폐 내지 무모한 지연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偏在)되어 있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도입하고자 함. 원고단체는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하는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와 피해 채무액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관련 증인들에 대해서 법정 외에서 당사자(법률대리인)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2025-12-3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통해 영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별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부재함

또한 최근 일부 기업형 임차인 및 외국법인 등이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의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이는 정상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저해하고 선의의 임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며,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세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10년 이상 장기간 성실하게 영업을 해온 소상공인이 건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생계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현행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권리금 회수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들 생계형 임차인은 해당 상가에서의 영업이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많아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 시 심각한 생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보상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대법원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현행기준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실제로는 재건축 등의 사유로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권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에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고, 보상금을 노리는 기업형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며,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2026-01-02 발의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341조의3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2025-12-31 발의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공개가 늦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가 아닌 과거의 정보로 가맹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의무로 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방식 검증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비대칭 없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2025-12-31 발의

현행법은 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부담비율의 상한을 규정하는 한편,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추가비용에 대한 규율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현행법상 지급기한 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오히려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판매 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다른 업체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납품업체 부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계를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2025-12-31 발의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옴. 그러나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적인 이익실현에 매몰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소비자 및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3인)

2025-12-31 발의

국내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음.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에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수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의 의무화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025-12-29 발의

현행법은 이차전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가 가지는 국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부재하고,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적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함

이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납부세액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한편, 환급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2025-12-29 발의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어 가계자금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장기투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함 (안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6인)

2025-12-30 발의

디스플레이기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디스플레이기술에 대한 지원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기술 사업 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소재·부품·장비의 활용 비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제도를 운영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제25조의9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025-12-29 발의

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 제34조의2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용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현황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025-12-29 발의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가 새로운 원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자로 대비 안전성이 향상되고 건설기간이 단축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하여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4인)

2025-12-29 발의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2025-12-30 발의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이 관계 기관의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서버 파기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 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2025-12-29 발의

최근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탈취·유출 대응에 필요한 국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2025-12-29 발의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8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2025-12-30 발의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적발된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1,083건에 달함. 그런데 실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53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20인)

2025-12-30 발의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그 결과 부처 및 사업별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이 분산되어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외환경 변화 대응,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투자, 현지 거점 구축 등 현장의 핵심 수요를 포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전담기관의 지정, 해외판로 확대·교육·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 성과평가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공표를 통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2025-12-29 발의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화장품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3인)

2025-12-30 발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개화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제재보다는 '맞춤 규제'를 통한 혁신 기술 육성이 필요한 상황임.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정확성, 안전성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FDA에서 사전 승인된 변경계획(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 PCCP)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실시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자동적인 변경허가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된 변경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가·승인·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데이터셋·알고리즘·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허가·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제조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안 제8조제11항 후단 신설,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2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2025-12-30 발의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2025-12-30 발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오기술의 활용은 질병의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상황임.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지정·육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을 우선 허용하고, 허가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025-12-31 발의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 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화장품 영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2025-12-30 발의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촉박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은 건설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2025-12-30 발의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소규모·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를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6)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025-12-30 발의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지도 및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일 수 있고 기술발전 및 시장 반응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개선명령이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은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2025-12-31 발의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가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산정하더라도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하여 ‘노동 착취’,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2025-12-29 발의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 함.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안 제23조)

국토교통위원회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의원·윤재옥의원 등 11인)

2025-12-31 발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체계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 지난 20년 간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0% 가량 증가한 반면, 건설업 생산성은 오히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안전사고 발생률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 인력 증가는 건설 공정의 품질관리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설치·조립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 공사 위주의 생산체계를 탈현장화(Off- Site Construction)하는 것은 우리 건설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건축 공정을 미리 진행할 수 있고, 기상 악화 등으로부터 영향이 적어 기존 건설 공법 대비 30% 가량 공기를 단축하는 장점이 있으며, 매 공사마다 건설 현장과 인력이 바뀌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노동 숙련화 및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효과적임. 이 외에도 현장 고소(高所) 작업이 줄어들어 따라 공사 안전사고 감소에 유리하고, 도심 내 공사 시에도 소음과 분진 등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법적 체계가 미비하여 모듈러 건축의 특성과 상충되는 현장 중심의 각종 건설 규제 및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발주물량이 부족하여 높은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기술 투자 활성화도 부진한 상황임

이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1/5(월) 14:00 1/7(수) 14:00	- 고유법 심사
	법안심사1소위	12/29(월) 10:00	- 고유법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5(월) 14:00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	박수현·송기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6(화) 14:00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황정아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1/6(화) 14:00	지주회사법과 가상자산법의 현황과 과제	민홍철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강당
	1/7(수) 13:30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	민형배·전진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없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29(월)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의 유형(해상경계, 매립지 관할 분쟁 포함)과 시사점
12/30(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12/30(화)	금융	월간 기업 · 금융분쟁 뉴스레터
12/30(화)	노동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